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일시 : 2019.4.16(화) 오후2시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주최 :  , 시장경제제도연구소

후원 : 바른사회TV



■ ————— 순 서 ————— ■

■ 사 회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발 제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황 승 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 제

기업상속은 악인가? 9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높은 상속세는 위헌인가? 19

- 황 승 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경영권 승계’ 옥조이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악탈적 상속과세 29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정책토론회

발 제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황 승 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기업 상속은 악인가?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1. 배경

- 한국의 상속세율은 할증을 고려할 때 65%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임.
 - o 이런 높은 구조의 배경에는 기업 상속을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에 기인함.
 - o 그러나 세계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형태를 보이며, 이는 기업 상속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 국가경제는 기업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업 활동은 국가경제 수준을 나타냄. 이제 기업 상속을 국가 경제발전이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때임.
 - o 특히나 국제간 경쟁이 활발한 현대에서 모든 국가들의 정책목표는 국가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o 우리의 인식구조에 따라 최고로 높은 상속세 부담을 유지할 경우에 국가경제성장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
- 이제 기업 상속에 대한 인식과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임. 민주주의 구조 하에서 모든 제도는 국민들의 인식수준에 의해 결정됨.
 - o “기업 상속은 악인가?”를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질문해야 할 때임.
 - o 기업상속이란 배 아픔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배고픔이란 희생을 치러야 하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2. 한국의 경제발전과 대기업

- 한국의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경제정책 전략은:
 - o 정부주도로 시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영역에 골고루 나누어준 것이 아니고, 잘하는 기업에 더 지원하는 전력을 추진하였음.
 - o 그 결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형성되었음. **대기업 중심인 결과는**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특정 대기업에 몰아준 것이 아니고, 잘하는 기업에 더 지원한 결과로 대기업이 형성되었을 뿐임. 이런 구조는 개방화 국제경제 환경에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우연적인 발판이 되었음.

- 개방화 국제경제 환경에서 한국이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함
 - 대기업의 형성과정을 ‘정경유착’으로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와 경제의 협력 관계를 통해 국가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정경협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제 형성된 대기업이 지속하느냐, 쪼개 지는냐는 대기업에 대한 상속세제에 의해 결정될 상황임.
 - 이제 우리는 중요한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임. 대기업 존재를 과거 정경유착의 부작용으로 경제과정을 해석하고, 대기업을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면, 징벌적 상속세제를 통해 대기업이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임.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에는 상속세제의 조세지원을 통해 가업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음.
 - 그러나 대기업의 상속에 대해선 매우 강한 거부감이 깔려져 있음. 상속세율이 50%이나, 대주주 경우에는 할증해서 65%로 인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인식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임.
- 소득격차엔 흥분하지만 세금격차엔 조용하다: 한국의 법인세수는 대기업이 다 부담함.
 - 2017년 삼성전자의 법인세수: 전체 법인세수의 약 13%
 -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수의 약 80-90% 수준으로 부담.
 - 세금부담에서 대기업 중심의 독점구조임. 세금부담을 독점하는 대기업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이나 심각한 세금격차에 대해, 누구 하나 대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단위: 백만원)

연도	삼성전자 법인세	총 법인세	비율
2017	7,732,715	59,176,600	13.06%
2016	3,145,325	52,115,400	6.03%
2015	2,114,148	45,029,500	4.69%
2014	2,688,860	42,650,300	6.30%
2013	6,287,739	43,854,800	14.33%

3. 세금은 죽음마저 움직인다: 세금의 경제적 유인

-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세금과 죽음뿐이다.”
 - o 그러나 세금과 죽음은 독립적이지 않고, 죽음은 세금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
 - o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의해 반응한다는 경제학 명제에서 인간행동에는 죽음도 포함되어 있다.
- 미국 Kopczuk and Slemrod(2003)
 - o 미국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한 실증결과, 상속세부담이 낮은 쪽으로 사망확률이 높아지며, 2000년 기준으로 만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사망시간을 연장하는 확률이 1.6% 증가
- 호주 Gans and Leigh(2006)
 - o 1979년에 있었던 상속세 폐지의 실증효과를 분석, 사망자 5%가 상속세 폐지되기 전주에서 다음 주로 사망 시기를 옮겼음
- 스웨덴 사망자료. Eliason and Ohlsson(2007)
 - o 2004년과 2005년에 상속세제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이 시기를 전후로 사망 패턴을 조사: 2004년엔 배우자에 대한 취득형 상속세 폐지, 2005년엔 상속세 및 증여세 폐지
 - o 2003/2004년과 2004/2005년 12월 3일부터 1월 14일까지이며, 비교대상은 이전 4년간의 평균치를 사용
 - o 2003년과 2004년 12월 31일에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상속세 폐지가 의회에서 결정된 다음날의 사망자 수는 16.3% 감소하나, 이후 14일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12월 31일에는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1월 1일에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제가 사망자의 사망시간을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하나의 변수로서 작동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4. 상속세 국제비교

- 한국의 상속세율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이지만, 최대주주에 대해 30% 할증제도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65%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가짐.
- OECD 국가들의 단순평균 상속세율이 15%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상속세율은 4배 이상으로 거의 징벌적인 수준임.
- 세계 최고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는;
 - 대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회피(avoidance, not evasion)를 위한 여러 가지 행태가 일어나며, 때로는 법에서 이런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음. 금융시장의 발전은 매우 빠른 반면, 법체계는 매우 느리므로, 변화하는 금융상품 거래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기업의 경제 활동에서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큼. 이는 기업성장을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역행하게 됨.

□ 기업의 수명

- 창업 200년 넘는 장수기업 5,586개 조사(한국은행 2008. 5)
 - 일본: 절반 이상 (3,146개)
 - 독일: 837개, 네덜란드 222개, 프랑스 196개
 - 한국: 없음, 100년 이상 기업은 두산, 동화약품 공업

4.1. 가업상속제도

□ 가족기업의 비중

- 가족기업 비중이 44% 이상 국가
 - o 대륙법 따르는; 독일, 스웨덴, 스페인, 브라질, 대만, 한국
 - 가족기업 비중이 24% 이하 국가
 - o 영미법 따르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 감면조항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여러 국가들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 일본의 가업승계
 - o 상속 비상장 주식 80% 납세유예, 증여 시엔 증여세 전액 납세유예
 - o 5년 이후에 일정 요건 충족 시 납부의무 면제
 - 독일
 - o 가업승계 후 7년 후 요건 만족 시 100% 공제
 - 영국
 - o 사업 자산 공제; 자산유형별 50% 혹은 100%
 - 한국의 가업승계 공제
 - o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17년 최대 가업상속공제 금액 500억 원
 -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이 혜택을 신청한 사례는 2011년부터 5년간은 연 평균 62건, 2016년에는 76건에 불과. 액수도 3,200억 원에 불과 (독일 가업상속제도: 연 평균 1만7천여 건, 액수 연간 55조원)
 - 독일은 가업상속제도 활용이 활발 → 연 평균 1만7천여 건, 액수로도 연간 55조원. 본래 독일의 상속세는 30%. 다만, 상속재산이 기업일 경우, 가업 승계 후 7년간 자산을 유지하고 급여총액의 평균이 승계 당시 급여 총액보다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요건을 지키면 상속 재산의 100%를 공제.
 -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의 국가들도 가업 상속 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큰 폭의 세금 공제 혜택

- 미국은 비영리 재단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가 없어서 재단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있음.

4.2. 상속세 폐지의 경제적 효과

- 조경엽(2015)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상속세 폐지시에 경제효과는 다음과 같음
 - o GDP 매년 증가율: 0.14-0.28%
 - o 일자리 창출: 59,000 - 110,000 개
- 상속세 인하가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실증연구는 많이 존재하며,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음.
 - o 미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하면, GDP가 0.8%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며, 그 파급효과는 아래 표와 같음.

표: 미국 상속세 폐지의 국가경제 효과

Economic and Revenue Change Estimates for Estate Tax Elimination vs. Current Law Projection (Billions of 2015 Dollars)	
Change in Level of GDP	0.8%
GDP Change in Terms of Today's Economy	\$137
Change in Private Business GDP	0.8%
Change in Private Business Stocks	2.2%
Change in Wage Rate	0.7%
Change in Private Business Hours of Work	0.1%
Full-time Equivalent Jobs (in Thousands)	139
Annual Static Federal Revenue Estimate in Steady State	-\$20
Annual Dynamic Federal Revenue Estimate after GDP Gain or Loss	\$8

표: 2000년 이후에 상속세를 폐지한 13개 국가들

국가명	폐지연도
Macau	2001
Portugal	2004
Slovak Republic	2004
Sweden	2005
Russia	2005
Hong Kong	2006
Hungary	2006
Singapore	2008
Austria	2008
Liechtenstein	2011
Brunei	2013
Czech Republic	2014
Norway	2014

표: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비교

순위	국가명	세율
1	Japan	55%
2	South Korea	50%(65%)
3	France	45%
4	United Kingdom	40%
4	United States	40%
6	Spain	34%
7	Ireland	33%
8	Belgium	30%
8	Germany	30%
10	Chile	25%
11	Greece	20%
11	Netherlands	20%
13	Finland	19%
14	Denmark	15%
15	Iceland	10%
15	Turkey	10%
17	Poland	7%
17	Switzerland (a)	7%
19	Italy	4%
20	Luxembourg (b)	0%
20	Serbia	0%
20	Slovenia	0%
20	Australia	0%
20	Austria	0%
20	Canada	0%
20	Estonia	0%
20	Israel	0%
20	Mexico	0%
20	New Zealand	0%
20	Norway	0%
20	Portugal	0%
20	Slovak Republic	0%
20	Sweden	0%
20	Hungary	0%
OECD 단순 평균치		15%

5. 기업 상속 인식을 바꿔야 할 때

- 국가정책은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것임. 상속세 제도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변수이나, 우린 과거 논리에 빠져 있음.
- o 선진국이 되려면 선진국민의 의식구조를 가져야 가능함. 이제 상속세 정책의 기본방향도 배 아픔을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아니고, 좀 더 배부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때임.
- o 죽음을 보는 사회적 인식이 세상을 바꾼다: 다 쓰고 간다. vs. 이어간다
- o 삶의 목적: 생존과 번식 / 생존을 위해 생산하고, 번식이 있기에 더 생산하려고 한다.
 - > 인간본성에 충실한 제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높은 상속세는 위헌인가?

황 승 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칼 마르크스(1818-1883)는 1848년에 발간한 ‘공산당선언’에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을 소개하였다. 그 전략으로 모든 자본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가의 소유로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들을 보면, 높은 상속세와 높은 누진소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소유를 폐지하고, 은행을 국유화하고, 교통과 운송수단 그리고 공장을 국유화하며,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노동의무를 갖게 하며, 모든 아동들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이 공산당 선언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실험을 했던 종주국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몰락하고 나서 자유 시장경제 제도로 옮겨 탔다. 그러나 170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에 발표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화 전략이 해방 후 북한과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에게 바이블이었다. 이는 또 우리나라 좌파 학생운동권과 30년 전의 사노맹의 기본 목표였다. 이 전략은 아직도 살아남아 현재 한국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 같다.

높은 상속세는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중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핵심 전략

마르크스의 공산화 전략 중 재산의 사적소유를 없애고 국유화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국민적 저항이 가장 적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상속세 제도이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를 납부할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적으며, 당사자가 사망한 후 발생하므로 본인이 관여할 수 없고, 상속인인 자손들도 평생에 단 한번만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준비되거나 학습되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의 부당함에 저항할 기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상속세 제도는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는 다른 모든 전략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또 상속세는 생산수단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국유화정책이어서 그 사회적 파장은 대단히 크고, 또 자유와 재산권 등의 기본권과 관련되어서 국민들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가 높기로 단연 1위이다. 대

부분의 나라들은 상속세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상속세의 많은 모순을 발견하고 세금을 없앴거나 크게 낮추었다. 있다 하더라도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실질 상속세가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현재 우리나라만 시대착오적이고 갈라파고스적으로 높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더 강화해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제시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가? 기업을 상속 받을 때 높은 세금 때문에 경영권을 잃거나, 상속된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은 현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이 제도는 마르크스가 말한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높은 상속세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와 그 근간인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있다. 재산권의 핵심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인데, 이는 헌법 개정에도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헌법개정한계’에 속한다는 것이다. 헌법 2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또 헌법 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한다. 법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에 머물러야 하며 재산권의 침해가 과도하다고 여겨지면 누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심사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는 사회주의적인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은 모두 위헌이며, 특히 상속세로 인하여 사영기업이 국유화 또는 공영화되는 제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대기업 주식을 상속할 경우 50%의 상속세에 할증과세를 최고 30%를 더하여, 65%의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만약 세금으로 납부할 재산이 없어서 주식으로 물납을 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국가가 갖게 된다. 이는 사영기업을 국유화 하는 경우가 아닌가? 또 기업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급여 또는 상여금을 받거나 배당을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46.2% 납부하고(추가로 준조세에 해당하는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면 세율은 더 높아진다) 나머지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 상

속받는 총액보다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면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의 두 경우 모두 ‘과세의 과잉’에 해당한다고 보여 진다. 한편 ‘주식 평가 할증률’에 대한 현재 판결에서, 할증과세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라고 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현재의 결정(2002헌바65결정)이 있다. 그러나 상속세의 할증과세에서, 현재의 판결과 같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세율의 할증을 받아들여서 65%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면, 존재했던 경영권을 잃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는 발생하지 않은 프리미엄을 발생했다고 간주하여 과세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필자의 상식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많은 유럽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을 상속받을 때는 세금을 유예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식을 팔아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내게 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의 소득세법만으로도 형평과세 할 수 있어

어떤 기업인의 후손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나서 회사를 상속받았다면 그 회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급여 혹은 상여금을 받을 때 최고 46.2%의 소득세를 내고 나서야 비로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회사의 돈은 회사 법인의 돈이지 사주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회사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주가 정해진 한도 이상의 접대비를 사용한다면 한도를 넘은 액수는 사주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다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세 제도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합리적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재산이 기업이 아닐 경우, 개인이 평생 노력하여 재산을 모았다고 했을 때 이 재산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모은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완벽하게 전산화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선진 국가들의 조세 환경에서 탈세는 불가능하다. 개인의 재산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형성된 것이라면 세무당국은 바로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즉시 입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의무적인 준조세 성격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고 나서 나머지를 절약하여 저축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또 한 번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성공을 벌하는 것이고, 저축과 절약에 대한 징벌이며, 이중과세이다. 이는 헌법 소원 대상인 ‘과세의 과잉’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논리는 불행히도 능력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해 묵살되어 왔다. 이를 방조하면 그 결과는 공평하게 못사는 것이 될 것이다.

LG그룹의 상속세 문제

작년 말 대부분의 언론에 LG그룹 신임 구광모 회장의 상속세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도 내용은,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주)LG 주식 지분이 11.28% (1천 945만8,169주)였고,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8.76%를 물려받아 원래의 6.24%의 지분이 15.0%로 높아졌고, 장녀와 차녀는 각각 2.01%와 0.51%를 분할 상속받아 사상 최대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은 상속재산인 주식 총액이 1조5,2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도했다. 대기업의 회사 주식이 상속될 때 상속세는 30억 이상이면 50%이며(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누진공제 등이 있으나 전체 상속재산과 비교하여 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무시한다), 상속인이 경영권의 승계와 관련이 있는 특수관계인(즉 자녀와 배우자 등)일 경우 할증세를 더 내야 하는데, 주식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30%, 그 이하이면 20%를 더 낸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상속세는 과세표준액의 60%를 내는 것에 해당한다. 상속세를 상속발생 시점에서 6개월 후인 11월말까지 신고해야했다. 11월 말 언론은 구광모회장이 상속세 9,215억원을 신고하고 1차 상속세 1,536억을 자회사를 매각한 돈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납부하였으며 나머지는 “향후 5년 동안 나누어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면 상속인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추가 세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물론 상속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그 돈으로 내면 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한다.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세금을 낸다고 할 때 주가가 하락하면 예상보다 주식을 더 매각해야한다. 주가가 상승하면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한다. 주식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내게 되면 당연히 주식 지분이 줄어서 경영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보도의 의하면 상속인들은 (주)LG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LG그룹의 다른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여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냈다한다. 물론 과세당국에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도 내야하며 대출에 대한 이자도 매년 상환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세금과 대출 원금과 이자를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까?

경영권을 지키면서 상속세금을 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제도

상속인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원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결국 배당을 받거나 연봉을 받아서 대출금

을 상환하거나 세금을 내야한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배당을 받는다고 할 때 배당을 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하게 해야 하므로 회사를 폐업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배당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봉이나 상여금을 많이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연봉과 배당에는 46.2%나 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총 9,215억 원의 세금 납부를 위해 연봉과 배당을 받는다면 46.2%의 종소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대략 1조 7,130억 원을 배당이나 연봉으로 받아서 종합소득세 7,915억 원을 내고 나머지 9,215억 원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이자와 연부연납 이자를 합하면 납부액수는 훨씬 더 커진다. 따라서 상속받는 주식의 가치 1조 5,200억 원보다 더 많은 최소한 1조 7,130억 원을 배당이나 연봉으로 받아야 한다. 현금이 아닌 주식의 가치를 상속받으면서 주식가치보다 많은 현금을 배당이나 연봉으로 받아야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아이러니는 이것이 ‘이중과세’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몇 사람에게만 특별히 많은 급여나 상여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받아들일 리 없고 이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어 기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65%를 78%로 더 올리려는 법안이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LG그룹의 상속세는 역대 국내 상속세 납부액 중 최대이다. (주)LG 관계자는 “구 회장 등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상속세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을 매각하여 지분을 줄이지 않는다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많은 재벌그룹들은 이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결국 그 방법이 편법이라 하여 법적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이는 크건 작건 기업주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0-30년에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기업인들이 평생 일군 회사를 상속이 발생하면서 결국 국가에 헌납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서 국가는 더 부자가 되고 개인은 더 가난해진다. 그러나 가난한 개인들이 모인 국가는 결국에는 망한다.

한진그룹의 상속세 문제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의 타계 이후, 조회장의 갑작스런 죽음이 누구 때문이나 하는 문제와, 상속세가 얼마나 될 것이며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한 후에 과연 상속자인 조양호회장 자녀들에게 경영권이 이어질 것인가 혹은 주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유화가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언론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는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약탈적

상속세와 할증과세 때문이다. (주)대한항공과 (주)한진을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 17.84%를 갖고 있었던 조양호회장은 자녀들의 주식을 포함한 우호지분 28.95%로 그룹을 지배하였는데, 조양호 회장의 재산 60%를 상속세로 납부하기 위해 주식을 매각하거나 물납을 한다고 하면 상속자들의 지분이 줄어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상속이 발생할 경우 사망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주가를 평균을 내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정한다. 한진칼의 주가가 조회장의 별세소식이 전해진 4월8일 25,200원에서 4월8일 종가 44,100으로 75%가 올랐다. 이 주가가 지속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많이 올라 납부해야할 상속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특히 한진그룹 회사들의 이사회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불신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에서 나온다. 조양호회장의 별세 열흘 전, 국민연금은 조양호회장의 대한항공 이사선임을 반대하여 결국 경영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지금도 수사 중이고 또 재판중인 사건들을 이유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국민연금이 조양호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행동을 한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들이 있다. 한편 국민연금이 조양호회장을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킨 것을 계기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 원년이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는 여당 정치인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상속세를 통해 개인과 기업은 더 가난해 지고 국가도 결국에는 가난해지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2018년 5월 ‘포브스’지에 의하면 206억불이라 한다. 원화로 약 23조 원이 더 된다. 이 재산은 대부분 삼성그룹의 주식이라 여겨진다. 만약에 이에 대한 상속세를 추정해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약 14조 원 정도를 납부해야한다. 만약 약 14조 원을 주식을 매각하여 상속세금으로 납부한다면 주식 지분이 줄어서 경영권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가 외국계 주주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의 경우에도 상속이 발생한다면 역시 같은 이유로 경영권의 승계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들은 상속이 발생하면서 외국계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이 지배하는 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는 국민기업이 된다. 이 문제는 재벌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도 해당된다. 상속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게 된다.

그 결과를 예상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다. 1980년대 중반 스웨덴에서 높은 상

속세 때문에 Astra, IKEA, Tetra Pak 등 많은 회사가 해외로 떠났다. 결국 25년이 지난 후에 잘못을 깨달은 스웨덴 국회가 법률을 개정하여 상속세를 없애고서야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다. 돌아오지 않은 회사들도 많았지만 세금 때문에 새롭게 떠나는 회사는 더 이상 없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속세를 걱정해서 기업들을 매각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락앤락, 농우바이오, 유니더스, 요진건설, 유영산업, 선보공업, 카사미아, 우리로광통신, 에어비타, 에이블씨엔씨 등등. 일부 회사는 회사 매각 후 해외로 떠나 외국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한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베네주엘라에서 높은 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폐업을 하거나 외국으로 떠나고, 젊은이들이나 고급두뇌와 숙련공들도 일 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우리나라도 이 나라들이 경험한 그 길로 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월 너무나 양심적이고 솔직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국민들에게 해외로 떠날 것을 권유했었다.

한편 일부 정치인들과 좌파 사회단체들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3, 4세의 경영권 승계는 한국 주요 기업들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소유권을 잃게 하고 회사를 국민기업화하자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쓴 나라들은 예외 없이 모두 망했다. 왜 이 사실을 모두들 외면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예외나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가? 국민기업이 된 (주)기아자동차가 1997년 IMF 사태를 촉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떠오른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가 위험이 아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경총은 작년 말에 50%의 상속세를 25%로 낮추는 것과, 지배주주에 대한 할증과세의 폐지를 국회에 건의했다한다. 25%로 건의한 이유가 흥미롭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존재하는 나라들의 평균이 26%라서 그와 유사한 25%로 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OECD 35개국 상속세 평균이 아니라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 16개국을 제외하고,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만의 평균을 계산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OECD 전체 국가의 상속세 평균은 14.5%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속 재산이 기업의 주식일 경우 할인을 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상속인들의 기업경영권을 보호해주고 있다. 가업의 상속일 때 징벌적 할증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가족이라는 가치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강소기업의 왕국이라는 독일과 일본에서 상속세율이 독일(30%)은 실질과세가 4.5%이고 일본(55%)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질과세가 11%이다. 경총은 국회에 상속세의 인하를 건의함과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OECD국가들의 평균 상속세율인 14.5%보다 최고 세율이 4배나 더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재산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되는지, 또 상속이 발생하면서 사유기업이 국유화 또는 공유화되는 이 제도가 헌법위반이 아닌지 가려달라고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수준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에 맞는지, 만약 의심이 든다면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국내 최고의 로펌과 함께 헌법소원을 신청해야하지 않는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은 상속세 폐지나 인하를 공약으로 채택해야

기업의 승계는 고용의 승계이고 복지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여서 고용이 안정되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늘어나고 실업급여, 재교육비용, 취업비용 등을 비롯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서 상속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국가적으로 훨씬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최대의 복지는 좋은 일자리이다. 우리나라는 총 세수의 1% 남짓 밖에 되지 않는 상속세수를 위해 잃는 것이 훨씬 많다.

우리나라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제도가 있다.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업종, 고용, 자산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적용요건으로 인하여 이 제도의 혜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수가 연간 70여 건에 그친다. 가업상속 제도를 갖고 있는 독일은 연간 1만7천5백여 건이 넘는 회사가 혜택을 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미국과 같이 공익재단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속세를 매각 시점에 내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연구 대상이다. 이러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급히 이루어지기 바란다. 국회에서 자유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또 작은 정부와 낮은 세율, 큰 시장과 기업의 높은 자유도를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상속세를 낮추거나 유예하거나 없애자는 법 개정을 공약으로 선거를 치르고 평가받아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주어야 한다. 궁극적인 목표는 스웨덴과 같이 상속세 폐지로 가야 한다. 소득세로 공평과세는 충분하다.

상속세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 모순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로 인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낮추거나 없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속세가 기업을 망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파괴하는 저주의 제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경제전문가들과 지식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인을 질투하고 부자를 증오하도록 선동하는 현재 사회의 분위기상 상속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자유 우파 정당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해야하고, 만약 반기업적, 사회주의적 법제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설득하고 이에 대해 심판받아야한다. 상속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기업인들의 선택의 몫이다. 지금의 상속제도 아래에서 계속 기업을 할 것인가 혹은 폐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을 계속 하기 위해 외국으로 갈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게 되어 이를 국가와 사회에 기꺼이 헌납하고 물러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떠나게 될 것이다.

100년 넘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단 7개, 일본은 33,000개가 넘는다고 한다. 상속세 제도를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년 넘는 기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모두 해외로 떠날 것이고, 기업을 한다는 젊은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공무원만 남아있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경영권 승계’ 옥조이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악탈적 상속과세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 ‘동등한 출발’의 평등주의 명분에 포획된 상속과세

상속세는 일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과세이다. 일반인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의 세습’ 차단이라는 명분에 포획되기 쉽다. 상속은 ‘악’(惡)이고 상속세는 그에 대한 ‘응징’으로 비춰질 수 있다. 평등주의가 만연된 한국적 현실에서 상속과세는 ‘로빈 후드’식의 ‘공평을 위한 과세’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여겨질수록 내재된 ‘숨은 비용’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세를 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들지 않을 것이다. 상속세에 수반된 ‘숨은 비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 상실과 활력 저하 그리고 성장잠재력 훼손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이 ‘숨은 비용’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정책 엘리트가 직시해야겠지만 이도 기대난망이다. 그들은 일반대중의 여론동향을 살피기 바쁘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미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속세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사람은 ‘철강 왕’ 카네기였다. 카네기는 ‘富의 복음(The Gospel of Wealth)’이라는 책에서 부(富)는 그것이 유래한 공동체로 되돌아가야 하며, 상속은 자식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부패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으로 유명한 법철학자 존 롤스도, ‘축적된 부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정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등 거부들은 ‘책임 있는 부를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Responsible Wealth)를 만들어서 “우리들에 세금을 메기라”(Tax Us)는 의견광고를 내기도 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는 사람의 사망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상속세를 내지 못해 매물로 나온 가족 기업을 헐값에 사들여 정상화시킨 후 다시 매각한 것이다.¹⁾ 워런 버핏은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자산규모 290억 달러의 ‘빌 & 메린다 게이츠 재단’에 310억 달러를 자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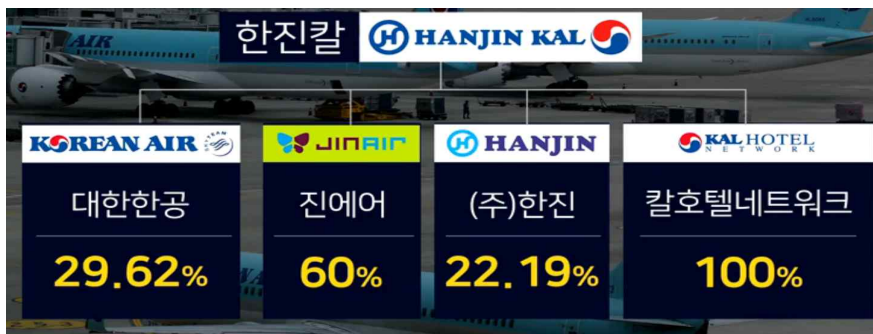
1) 그가 매수한 기업은 데어리 쿼, 조단 저스틴 인더스트리, 스타 퍼니처, 보렌하임, 벨 브리지 주얼리 등 수 없이 많다.

금으로 기부했다. 이로써 게이츠 재단의 자산규모는 500억불을 넘어섰다. ‘부(富)의 사회 환원’을 외치는 한국의 좌파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좌파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상속세 폐지 움직임에 이들 거부들이 공동보조를 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상론할 겨를은 없지만 이들 자선재단은 미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이다.

좌파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상속과세에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해 상속과세를 강화했다.²⁾ 참여정부 당시 상속세 강화에는 두 가지 정언적(定言的) 명분이 있었다. 첫째 상속세 강화를 통해 ‘부의 세대 간 세습’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둘째 상속은 땀 흘려 번 것이 아닌 단지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은 일종의 불로소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당연히 이를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속세는 ‘출발선(出發線)상의 동등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세금으로 인식되었다. 상속세에 대한 여론 동향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좌파 문재인정권 들어 평등주의 정서는 더욱 강화되었다.

2. 한진그룹의 상속세 납부: 경영권 승계 가능한 가

〈그림-1〉 한진그룹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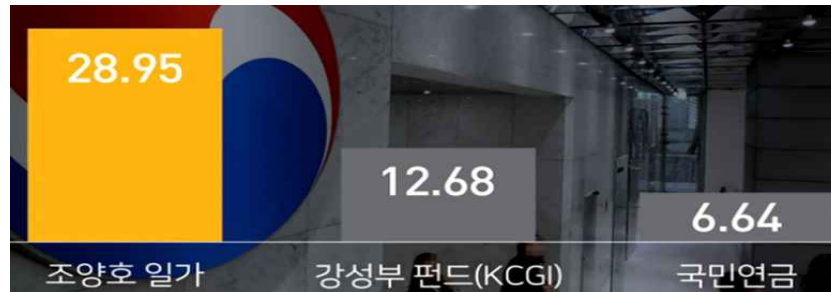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그림-1>과 같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을 지주회사로 그 밑에 계열사로 “대한항공(29.62%), 진에어(60%), 한진(22.19%), 칼호텔네트워크(100%)”를 두고 있다. 순환출자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지배구조는 간명하다.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구조는 <그림-2>와 같다. 최대주주는 조양호 일가로 지분률이 28.96%이며, 2대 주주는 강성부펀드(KCGI, 12.68%), 3대 주주는 국

2) 우리나라는 2001년 상속·증여세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보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했다. 이처럼 유형별 포괄과세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음에도 참여정부는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적기 과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상속과세에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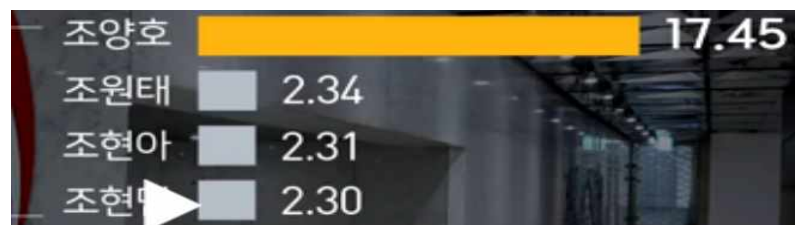
민연금(6.64%)이다. 조양호 일가의 한진칼 지분을 직계가족으로 쪼개면 <그림-3>과 같다. 조양호 회장의 급작스런 별세로 조양호 회장 지분 17.45%가 3자녀에게 상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2〉 한진칼 지분 구조 (단위 %, 지분률) I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2018년 12월 사업보고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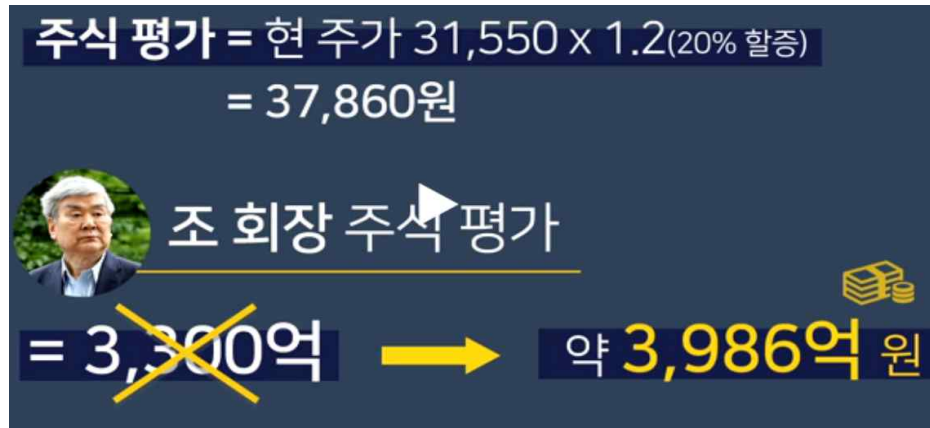
〈그림-3〉 조양호 직계 가족의 지분율



상속세는 조양호 회장이 소유한 주식평가액에 기초해서 부과된다. 한진칼의 주가 31,550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할증하면 <그림-4>와 같이 조회장의 주식평가는 약 4,000억원이 된다.³⁾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곱하면 조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는 약 2,000억이다. 상속지분을 매각하면 경영권을 잃게 되므로, 상속세 재원은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으로 마련하는 것이 보통이다.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천217억원인 바,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조달가능 금액은 610억 수준이다. 나머지 상속세 1천400억원은 배당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지난해 조 회장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원 수준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고 해도 납부 가능한 자금은 60억원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내기에 배당은 턱없이 부족하다.

3)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50% 미만이므로 2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할증된다. 경영승계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율은 60%(50%*1.2)에 이른다.

〈그림-4〉 조화장의 주식평가액



추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상속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사망 전 2달과 사망 후 2달을 평균한다. 사망 후 주가가 상승하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진칼과 강성부 펀드 간의 지분 확보 경쟁이 예상되면서 조회장 사망 직후 한진칼 주식은 20% 넘게 폭등했다. 물론 숨고르기가 이어지겠지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고배당 정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이 공유되면 한진칼의 주가는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조양호 회장의 재산은 한진칼이 전부가 아니다. 그가 보유한 한진 지분 6.87%(약 309억 원)와 정석인하학원 지분(2.14%), 대한항공(2.4%) 등 그룹 계열사 주식까지 합할 경우 자산평가액은 그만큼 늘어나고 상속액도 커진다. 그 밖에 비상장 주식과 현금 그리고 부동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명희 씨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내야할 상속세는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속세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 위해 상속받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1대 주주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내년은 장남 조원태 사장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기 때문에 강성부 펀드와의 치열한 지분싸움이 예상된다. 만약 국민연금이 강성부 펀드와 공조를 취한다면 한진그룹은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징벌적이고 약탈적인 상속세’가 성공한 기업의 주인을 바뀌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세계적 상속세 부담 완화 추세 속 한국만 역주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특히 기업 상속에 가혹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6%의 두 배이다. 여기에 최대주주의 지분이 50%를 넘으면 경영권 프리미엄 30%가 할증되어 실제 최고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세율은 65%(50%*1.3배)가 된다. 그렇게 되면 최고 세율이 55%인 일본 보다 높다.

상속세율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상속세가 강화되고 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다. 최근 신고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2016년 10% 하던 신고세액공제율이 2017년 7%, 2018년 5%, 2019년 3%까지 낮아졌다.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세계 각국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2018년 현재 OECD 35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2005년부터 상속과세를 폐지했다.⁴⁾ 그밖에 싱가포르, 홍콩, 중국, 러시아도 상속세가 없다. 이들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한 것은 전체 세수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주는 상속세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상속인(사망자)이 부를 축적하는 단계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사후(死後)에 다시 과세할 경우 ‘이중 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림-5〉 OECD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13개 국가



4) 스웨덴의 경우 2005년 상속·증여세를 모두 폐지한 후 조세회피 유인이 감소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 기업 경쟁력 향상, 가계 순저축률 증가, 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속세 대신 상속된 재산의 가치증식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자본이득과세’로 상속세를 대체하는 나라들도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각각 1972, 1977년, 1992년에 상속과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했다.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대부분 국가들은 세율을 절대적으로 낮게 예컨대 10%로 유지하거나, 10% 이상의 상속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소득세율보다 낮게 부과한다. 그리스, 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브라질, 대만 등이 10%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등은 상속세율이 10%를 초과하지만,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 프랑스는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형평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상속세와 소득세를 같은 율로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소득세율 보다 더 높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

4. 우리나라 상속과세는 ‘동등한 출발’에 얼마나 기여했나?

우리나라에서 상속과세는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출발’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나? <그림-6>은 2015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별 전체 세수 대비 상속 및 증여세 비중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1.3%)은 벨기에(1.6%)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은 OECD 평균 0.34%의 약 4배이다. 이 정도면 ‘동등한 출발’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의한 수준인 가.

<표-1>은 2010년 이후 상속세 결정현황을 표시한 것이다. 2017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사망자)는 6,986명이며 최종 상속세 결정세액은 약 2.4조원이다. 2017년 국세총액 265.3조원을 대입하면 2017년 ‘국세에서 차지하는 상속세 비중’은 0.92%이다. <표-1>에는 증여세가 빠져 있어 이를 감안하면 <그림-6>의 한국 국세 대비 비중 1.3%와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국세대비 1.3%의 상속·증여세가 ‘동등한 출발을 위한 지렛대’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속·증여세액을 국세가 아닌 GDP에 대비 시키면 그 비율을 더욱 작아진다. 상속세 강화라는 유량(flow)의 변화로 저량(sock) 변수인 ‘부의 집중’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림-6〉 OECD 국가별 전체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



〈표-1〉 상속세 결정현황 (단위 명,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피상속인수	4,547	5,720	6,201	6,275	7,542	6,592	7,393	6,986
과세표준	43,979	53,280	56,797	51,354	65,127	61,355	76,786	86,512
총결정세액	12,217	15,545	17,659	13,630	17,453	18,439	22,561	24,299

자료: 국세통계연보

한편 상속세 징수에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의 납세준응비용(compliance cost)은 매우 높다, 결국 상속세는 변호사와 회계사만 살찌게 만든다. 상속과세의 납세준응비용은 사회후생을 저하시키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으로 기능한다.

‘상속세의 교정효과가 미미하다’는 <표-1>의 해석은 상속세 찬성론자의 반론(反論)을 부를 수 있다. 쉽게 떠 올릴 수 있는 반론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부의 집중’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상속과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로 <표-1>이 해석될 수 있다.

그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 먼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출발선 상에서의 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타고난 ‘능력의 차이’이다. 그러나 생득(生得)적 자질과 능력은 ‘유전적 상속’으로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인적자본 축적도 그 출발은 ‘유전적 상속’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과세가 여의치 못하다.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그렇다면 인적자본을 결정하는 유전적 상속 이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과세는 가능한가? 이 역시 불가능하다. 예컨대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부모로부터 자녀가 받은 좋은 자극과 동기유발은 과세할 수 없는 일종의 ‘귀속소득’인 것이다. 결국 인적자본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속세로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정책적 기대를 낮춰야 한다. 상속세 중과는 형평성을 개선시키지도 못하고 경제효율의 상실만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

상속과세는 사람의 사망을 과세 사건으로 하는 ‘사망세’(death tax)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생존이 끝날 때 남긴 재산에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도덕적 관점에서 혐오적인 세금이 아닐 수 없다. 사망세의 관점에서 볼 때, 상속세는 낭비하고 소비를 즐긴 나머지 무일푼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세하고 반면 낭비하지 않고 근검절약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이다. 사망세로서의 상속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이다.

5. 상속세의 왜곡: 회피조세정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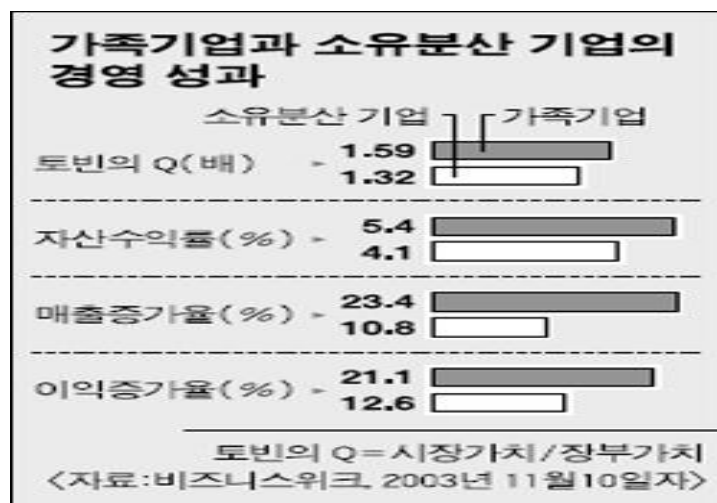
현재 상속세 체계는 2000년 세제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당시 상속세제 개편은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강화됐고 적용 세율은 45%에서 50%로 높아졌다. 상속세를 강화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세율이 불투명한 것’과 관련 있다. 소득 창출 및 재산 형성과정에서 ‘탈세’ 개연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걷지 못한 세금을 마지막 상속 단계에서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회피조세정산설’(回避租稅精算說)로 개념화 된다. 상속세는 상속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재산세와 소득세 등을 포탈 또는 회피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재산축적자의 사망시점에 상속세로써 ‘회피된 조세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과세의 부담이 상속인에게 귀착된다고 볼 때 피상속인의 포탈 또는 회피행위에 대해 결과적으로 상속인을 징벌하는 모순을 갖고 있다.⁵⁾

6. 상속세가 겨냥하는 큰 물고기는 경영권 승계

5) 전통적인 상속세 과세론은 재산권을 ‘자연권’이 아닌 ‘시민권’으로 인식한다. 재산상속권은 인간의 자연권이 아닌, 국가가 허용함으로써 성립된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재산상속권의 허용 정도에 대해 재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세율과 누진 정도를 국가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연권으로서의 재산권을 부정하면, 국가주의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적 기류는 반(反)기업 정서와 소유경영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 반(反)기업정서의 실체는 ‘반(反)기업인’ 정서이다. 예컨대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룹 총수는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낮은 품질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참고 물건을 팔아준 결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국민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기업은 모든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의미한다. 지배주주에 대한 부정적 심리는, “누가 경영하더라도 ‘민주적’으로만 경영하면 지금의 지배주주 일가(一家)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억측을 낳기도 한다. ‘민주적 경영’은 노조기반의 정치논리이다.

〈그림-7〉 가족기업과 소유분산 기업의 경영성과



전문경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지배주주에 대한 반(反)정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소유경영 대 전문경영”의 선택은 지배구조의 문제로써, 이론적으로 무엇이 더 우월한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근대기업의 역사가 오랜 서구 선진국은 전문경영체제가 정착되었음에도 “창업자 CEO 프리미엄”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의 IT 기업은 창업자가 CEO를 겸하는 소유경영자들이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MS 등이 그 사례다.

<그림-7>은 조금은 오랜 자료지만 가족기업과 소유분산 기업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것이다. 가족기업이 전문경영 기업보다 경영성과가 좋다는 것이다, 창의력과 위험부담을 마다않는 주인의식 그리고 생애를 걸고 일구어낸 기업에 대한 애정이 탁월한 실적의 동인인 것이다.

미국 제조업의 아이콘인 GE는 좌파들이 꿈에 그리던 기업이었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전형적인 모범 기업이다. 한국처럼 적은 지분으로 경영전권을

회두르고 일감을 몰아주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웰치와 이멜트에게는 21년과 17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다. 따라서 미국식 단기성과주의 단점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그런 GE가 몰락한 것이다. 1907년 ‘다우존스’에 입성한 GE는 2018년 6월 111년 만에 경영성과 부진으로 다우존스에서 퇴출됐다.

GE의 방향성 없는 인수·합병(M&A)이 ‘업의 본질’을 망각시키게 했다. 이멜트 회장은 웰치를 벤치마킹해 끊임없이 기업을 인수하고 매각해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하지만 기업을 사고파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삼성그룹 고(故) 이병철 회장의 지론은 ‘업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GE 몰락을 가져온 또 다른 용인은 ‘위험관리 실패’이다. GE의 장기간보험(LTC, long term care) 대형 손실은 90년대에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했다. GE는 2004년 LTC 보험을 판매했던 Genworth사를 GE캐피탈에서 분사해 매각했으나, 과거 부실계약 부분은 매각처를 찾지 못해 GE캐피탈이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고령화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요율을 낮게 책정했고, 보장도 정액보장이 아닌 실손보장으로 구조적으로 과다진료를 유발했다. 당연히 보험상품은 잘 팔렸지만 팔릴수록 적자가 누적되었다. GE캐피탈의 LTC 실패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체크해야 할 기본사항 조차 간과한 ‘위기관리(risk management)’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멜트 회장 17년 동안 GE주가 8% 상승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는 214% 상승했다. 전문경영인의 혹독한 실패 사례가 GE이다. 소유경영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은 ‘업의 본질과 위기관리’ 측면에서 전문경영을 대표하는 GE를 압도했다.

종업원 지주회사는 건실한 가. 착취적 지배주주보다 종업원이 주인인 종업원 지주회사의 경영효율이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은 종업원 지분이 55%로 세계에서 가장 큰 노동자 소유 기업이다. 2002년 12월 유나이티드항공의 모회사인 유에이엘(UAL)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일본 JAL은 지배주주를 내쫓고 국민기업으로 만들면서 골병이 들었다. 주인부재를 틈타 공무원 등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갔고 드디어 2010에 파산했다. 일본정부가 공적자금을 넣어 회생시켰다. 이러한 반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주인부재의 전문경영으로 책임경영을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7. 경영권 승계는 사적자치(私的自治) 영역

소유경영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제기되는 단골 메뉴는 ‘자질론’이다. 한마디로 경영능력이 ‘유전’되느냐이다.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 없는 피붙이에 대한 ‘맹목적 승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한

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때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자식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그리고 자식이 과연 물려받은 것을 잘 지켜낼 것인가를, 물려주는 당사자만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는 하이에크(Hayek)가 설파한, 당사자가 가장 정통할 수밖에 없는 ‘특정상황하의 현장지식’인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느냐 아니면 기업의 승계프로그램에 의해 자식 세대를 최고경영자로 기르느냐는 기업의 선택에 맡길 일이다. 약탈적 상속세가 ‘후자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망하게 하는 것”도 선택지로 존중되어야 한다. 경영권 승계는 ‘사적자치’(私的自治) 영역으로 제 3자가 관여할 이유는 없다.

8. 에필로그

‘가업(家業)을 잇는다’는 말을 한다. 가업을 잇는다는 것은 미담(美談)이다. 그렇다면 재벌의 경영권 승계는 ‘가업을 잇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양자 간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다르다면 ‘작은 것’의 대물림과 ‘큰 것’의 대물림의 차이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작은 것’의 대물림은 선(善)으로, ‘큰 것’의 대물림은 악(惡)한 것으로 ‘경계의 대상’이 된다. ‘이중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

경영권 승계는 그 기업이 최소한 현재까지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성공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도산한 한보철강의 경영권 승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약탈적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성공을 처벌하고 부를 파괴하는 것이다.⁶⁾

경영권 승계는 사적자치 영역이다. 일반대중이 ‘여론의 옷’을 입고, “기업가 정신이 유전되느냐” 식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경영인에게 위임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경영권 승계의 성공여부는 ‘비인격적’ 시장이 엄정하게 판정한다. 경영권 승계의 안착여부는 시장의 몫이다.

65%율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논거는 무엇인 가. 상속세율 65%를 ‘국가의 청구행위’로 해석하면 국가가 기업이 그만큼 성장하도록 유형·무형으로 도와주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특정기업을 도와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기업 활동이 수행되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인 데, 그 것을 이유로

6) 상속세를 준비하지 못해서 회사를 매각한 경우도 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사 ‘쓰리세븐’의 창업자는 2008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당시 유족들은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했고 경영권을 빼앗겼다.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쓰리세븐의 2009년 매출은 2001년 매출의 3분의1로 급감했다.

65%의 상속세를 요구할 수는 없다. 역설적으로 국가는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65% 상속세율은 설명이 안 된다.

우리는 ‘동일선 상의 출발’이라는 명분에 포획된 상속세의 미몽(迷夢)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속세를 100% 부과하지 않는 한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게 할 수 없다. 상속세율 인하를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음모로 여기면 선택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다.

이제는 상속세에 대한 신화(神話)를 버려야 할 때이다. 상속세 강화로 얻어지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쟁 환경 하에서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oot)는 전(全)지구적 차원에서의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형평을 높인다고 세금을 많이 받으려하다가 세금을 낼 사람과 기업을 모두 잃게 된다.

상속세를 폐지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부동산, 주식 등을 상속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는 마땅히 이연되어야 한다. 상속과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도 상속세 완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평등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경제를 도덕률로 재는 원리주의 역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고래’가 해체되어 죽은 고기로 거래 되면 모두 ‘가난’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게 될 것이다. 이를 바라는 가.//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시장경제제도연구소**